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수도물의 수질기준과 계량기 등의 수도용 자재에 대한 위생기준이 강화 되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먹는물 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나. 수도용 계량기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위생적인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인체에 유해한 성분 용출이 있는 재질의 계량기가 사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시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수질 향상을 위하여 인체에 무해한 청동의 재질로 사용된 계량기로 개선하여 수도물의 신뢰와 음용률을 제고해 나가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수도계량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8일(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 전화 032-440-6234,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도계량기 설치 등) 수도법에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도미터 내부의 물과 접촉하는 모든 부품은 무독성, 유해화학반응 및 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 하는 청동재질이 사용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19조의2(수도계량기 설치 등)</u> <u>수도법에서 정하는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도 미터 내부의 물과 접촉하는 모든 부품은 무독성, 유해화학반응 및 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 하는 청동재질이 사용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u>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수도법

제18조 (시설 기준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물에 접촉하는 자재나 제품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08.5.2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7.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관계 법령	□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위생안전기준)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3년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